

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

- 22일 업계 간담회에서 인증제 도입('25.2월)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

□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*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.

*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·판매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2일(수)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,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*를 개최할 예정이다.

* 11.22(수) 14시, 교통안전공단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, 자동차제작사 등

○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('23.8월)된 「자동차관리법」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,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.

□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,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○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성능시험대행자)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 또한,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”이라며,

○ “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홍예표 (044-201-3846) 강힘찬 (044-201-3839)



□ 추진배경

○ 최근 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,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급

- 그러나 기존법은 제작자 책임하에 차량을 제작·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

⇒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新체계 도입

* 자동차관리법 개정완료('23.8 공포, '25.2 시행), 하위법령 개정('2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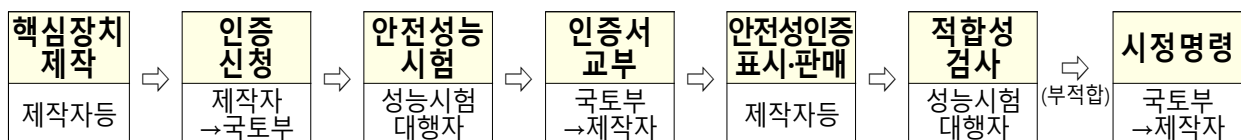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①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

- 전기차 안전 관리 및 배터리 산업지원을 위해 차량등록 시 배터리는 별도 등록하도록 하여 운행 ~ 폐차 시까지 이력관리 기반 마련

② 핵심장치 안전성 인증 도입

<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도 절차 >



- (안전성인증) 구동축전지(배터리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

- (안전성능시험) 안전성 인증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(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)

* 거짓 또는 부정행위로 인증받거나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

- (적합성검사)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

*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